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4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가.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주요현안 집중 대응을 위해 부지사의 사무 분장이 변경되었음.

나. 사무분장에 따라 충청북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비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(안 제 7조)

-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“행정부지사”에서 “장사관련 업무를 관장 하는 부지사”로 변경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음창규)

가. 제안 배경 및 필요성

- 충청북도는 지난해 8월 9일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4조를 개정하여 행정부지사 및 정무부지사 체제로 전환하고, ‘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(정무부지사 소관 업무 제외)’은 행정부지사 소관업무로 일원화했음.²²⁾

개정 전	개정 후
제4조(부지사) ① (생략)	제4조(부지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 1.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(다만, 경제부지사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 2.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·감독 3. 정부, 국회, 언론,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·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	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 1.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(다만, 정무부지사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 2.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·감독 3. 삭제 <2024.8.9.> 4.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·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③ 경제부지사 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 1. 경제통상국, 과학인재국, 투자유치국, 바이오식품의약국, 환경산림국,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 및 그 밖에 <u>경제관련 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</u> 2. 의회, 정부, 국회, 언론, 정당,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·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	③ 정무부지사 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 1.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·회의 참석(신설) 2. 의회, 정부, 국회, 언론, 정당, 경제단체 등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수행 3. 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(제1호에서 이동 및 축소) 4.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·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22) 행정운영과-19823(2024. 8. 26.) 행정·정무부지사 분장사무 및 결재방안 알림

- 이어 같은 해 11월 27일 정무부지사의 부서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, 주요 현안 추진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경제관련 사무분장 범위를 **경제·복지·과학·인구·청년·공항·국회** 등의 업무로 확정함.²³⁾
-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가 행정부지사 사무에서 정무부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에서 행정부지사로 명시된 규정을 수정 및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음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지사의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단순히 기존 조례의 자구나 표현만을 일부 수정하게 되는 비효율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, 그 내용도 적절함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이 개정안의 안 제7조제2항은 “행정부지사”를 “**장사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**”로 개정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7조(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)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관계공무원, 학식과 덕망이 있고 문화재등에 조예가 깊은 자, 관련기관·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	제7조(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) ②----- 장사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23) 행정운영과-27562(2024. 11. 27.) 정무부지사 분장사무 및 결재방안 알림

* 실국 사무 : 경제통상국, **보건복지국**, 과학인재국, **인구청년정책담당관**, 공항지원팀

- 위 개정은 앞서 언급한 사무분장 범위의 확정에 따라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고 내용 또한 적절함.
- 또한, 정무부지사가 아닌 장사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표현한 것은 차후 부지사 명칭 변경 등의 사정 발생 시 개정 소요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
관련법령 발췌

□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·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·보수를 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－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,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·첨부하여야 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○ 사 유

- － 「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부서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, 주요현안 추진에 집중 대응하기 위한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*을 반영

* 경제·복지·과학·인구·청년·공항·국회 등 업무

- －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

○ 작성자

- － 보건의복지국 노인복지과장 조 성 돈